

#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1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5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입법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, 일부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의 변동에 따라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조례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규정함(안 제1조).
- 일부 조문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킴(안 제2조, 안 제6조).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서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제목을 수정함(안 제3조).
-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7조).

#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,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의 제목 “(책무)”를 “(시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향유할”을 “누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”를 “법 제10조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인문교육의 실시 등)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 중 “협력하여야 한다”를 “협력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확산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인문”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.</p> <p>2. “인문학”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·문학·역사학·철학·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·체험·표현·이해·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,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</p>

3. “인문정신문화”란 인문에 기  
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  
향하는 활동 및 유형·무형의  
문화적 산물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(이하  
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인문정신문  
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자발적  
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 
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  
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) ①

시장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  
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 
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  
화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  
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  
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인문교육의 실시 등) 시장

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  
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 
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  
-----  
--- 누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) ①

---- 법 제10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인문교육의 실시 등) 시장

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 
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  
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  
여야 한다.

3.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2호  
에 따른 평생교육기관

4.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 
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 
제9조에 따른 기관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 
인정하는 기관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인  
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 
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 
정부,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  
구,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 
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  
여야 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협력할  
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,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
2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, 추진 주체

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

3.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

4.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사업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·수집·보존 사업

2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
3.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
4.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인문교육의 실시 등)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, 서울특별시교육청, 자치구,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, 단체,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